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군유휴지(軍遊休地)등의 발전 및 지원 방안 마련〉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57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가.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4
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9
1) 제정안에 대한 논의 배경 및 총괄 검토	9
2) 관계기관 의견	15
2. 주요 조문별 검토	16
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16
1) 종합계획·실행계획의 수립 및 군유휴지발전심의회(안 제4조~제7조) ..	16
나. 사업의 시행	20
1) 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승인 등(안 제8·9조)	20
2) 인·허가 등의 의제(안 제10조)	23
3) 군유휴지의 처분 등(안 제14조)	27

4) 지방자치단체의 군유휴지 활용 지원(안 제16조)	31
다. 군유휴지등에 관한 지원 등	33
1) 사업비 지원과 조성(안 제17조)	33
2)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안 제19조)	35
3) 지원도시사업구역(안 제21조~제23조)	38
4) 공장 신설·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안 제24·25조)	40
5) 교육재정지원의 특례(안 제26조)	43
라. 보칙	44
마. 부칙	45

※ 참고자료	47
1. ‘제정안’과 ‘제21대국회 발의안’ 주요 차이점	47
2. 제정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4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병주 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6.
3. 회부연월일 : 2026.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형성된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유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군유�휴지”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할 부지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확정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 다.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군유�휴지 및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군유�휴지에 대해 징발 해제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 매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대금을 5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유�휴지등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도시사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군유휴지등에서의 공장의 신설, 학교의 이전, 교육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특례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유휴지등에 사회기반 시설·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며, 고용안정사업 등을 지원 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7058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 제정안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¹⁾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발생하는 군유휴지와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사업시행 절차, 각종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총 5장 34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은 총칙 부분으로, 제1조부터 제3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음.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군부대부지”, “군유휴지”, “지원도시사업구역” 등과 같이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2장은 군유휴지등 사업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부분으로,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음. 제4조는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5조는 국방부장관이 군유휴지등발전심의회를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며, 제6조는 종합계획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을, 제7조는 사업에 대한 심의기관인 군유휴지등발전심의회를 규정함.

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2006.12. 제정)은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 개선 등 국방개혁의 기본이념과 추진방법을 규정한 법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군구조개편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함.

제3장은 사업의 시행 부분으로,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시행자, 사업의 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사용, 공공시설의 귀속·양도, 군유휴지의 처분 및 군유휴지의 규제 특례 등을 두고 있음.

제4장은 군유휴지등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비 지원과 조성,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지원 도시사업구역 지정, 각종 특례²⁾ 및 지원사항³⁾ 등을 신설함.

제5장은 보칙 부분으로,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사업장의 출입·검사, 중앙 행정기관 장의 권한의 위임,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시행일,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적용례, 인·허가등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 제정안의 전반적인 체계는 법안의 목적 및 취지로 인하여 법문 표현이나 자구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주요 체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접경지역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2) 일반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제18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의 특례(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제24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제25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제26조)

3) 사회기반시설 지원(제28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제29조),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제30조),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제31조)

[제정안의 조문 체계]

조문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군유휴지(軍遊休地)와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합리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 군부대부지, 군유휴지, 군유휴지주변지역, 지원도시 사업구역에 대한 정의를 마련함.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제2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군유휴지 관할 특별시장 등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군유휴지등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함.
제5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 종합계획의 확정·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정함.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 제5조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절차(의견 청취, 군유휴지등발전심의회 심의 등)를 정함.
제7조(군유휴지등발전심의회)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유휴지등발전심의회를 두어 군유휴지주변지역 지정, 종합계획·연도별 실행계획 확정·변경 등을 심의하도록 함.
제3장 사업의 시행	
제8조(사업시행자)	○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
제9조(사업의 승인 등)	○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사업을 승인하는 주체를 정하고, 사업 승인 이후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
제10조(인·허가 등의 의제)	○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나 사업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인·허가 등을 의제할 수 있도록 정함.
제1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나 물건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결신청 등에 있어 특례를 규정함.
제12조(공공시설의 귀속·양도)	○ 신규 또는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제13조(선수금)	○ 조성하는 토지나 시설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

조문	주요내용
제14조(군유휴지의 처분 등)	○ 군유휴지의 징발해제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관하여 정하고, 군유휴지의 지상물, 토양오염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제15조(군유휴지의 규제 특례)	○ 군유휴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봄.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군유휴지 활용 지원)	○ 토지 매입 비용 지원, 토지 대금 분할상환, 영구시설물 설치를 전제로 한 사용·수익 허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4장 군유휴지등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우선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고,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하는 등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제18조(일반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등의 비용을 전액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제1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이전해 오는 경우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제20조(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의 특례)	○ 개발제한구역 안의 군유휴지등을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승인할 시 해제물량을 별도로 할당함.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2년 내 사업 미착수 등의 사유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군기본계획, 관광지등의 지정·승인이 있는 것으로 봄.
제24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고,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도록 함.
제25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 학교 이전·증설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제26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27조(고용안정사업 등)	○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고,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28조(사회기반시설 지원)	○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
제29조(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설립 비용 지원에 관하여 정함.

조문	주요내용
제30조(교육·문화·관광 시설에 대한 지원)	○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인·허가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
제31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 농림·해양·수산업 기반 육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5장 보칙 등	
제32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제33조(권한의 위임)	○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제34조(과태료)	○ 자료 제출이나 검사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부칙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변경)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3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적용례)	○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변경)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4조(인·허가등의 경과조치)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승인 또는 인·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제정안에 대한 논의 배경 및 총괄 검토

□ 최근 국방개혁⁴⁾에 의하여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종전에 군부대부지로 사용되던 토지가 더 이상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등 군유휴지가 발생하고 있음.⁵⁾

이에 따라 군유휴지 자체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발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체 대상 군부대 현황]

지역		부대	해체연도
경기도	포천시	제6군단 사령부	2022년
	양평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2019년
	양주시	제26기계화보병사단	2018년
	동두천시	제28보병사단	2025년
	고양시	제30기계화보병사단	2020년
강원도	양양군	제8군단 사령부	2023년
	양구군	제2보병사단	2019년
	삼척시	제23보병사단	2021년
	화천군	제27보병사단	2022년

※ 자료 : 국방부

4) 국방부가 2018년 발표한 「국방개혁 2.0」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상비병력 감축 및 군단·사단의 통폐합 등 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국방개혁기본계획으로, 그 과정에서 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군유휴지 발생

5) 국방부는 병력 절감에 따라 군구조의 개편과 군부대 재배치를 통한 군집화와 거점화를 추진 중으로, 지상작전사령부의 창설과 함께 8개 군단을 6개 군단으로, 39개 사단을 32개 사단으로 감축하였음. 이에 따라 경기도의 (구)제20기계화보병사단, (구)제26기계화보병사단, 제28보병사단, 제30기계화보병사단과 강원도의 (구)제2보병사단, 제23보병사단, 제27보병사단 등이 해체되었음.

□ 제정안은 이러한 군유휴지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아니할 부지”로 정의하고 있음.

현재 전국의 군유휴지 총면적은 약 79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이 중 경기도(53.1%)와 강원도(22.4%)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방부는 2026년에 이 중 약 절반인 총 350만 제곱미터(공시지가 2,346억원) 규모를 정리할 계획임.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된 군유휴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 후 총괄청(재정경제부장관)에 인계하거나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식,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국방부가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함.⁶⁾

6)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54조(교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2006년 1월 1일 이후 국방·군사시설이전에 따라 발생한 국방부 소관 유희 국유재산 처분대금

[군유휴지(미활용 군용지) 현황 (2026년 기준)]

(단위: 필지, 만m²)

지역구분	현황		지역구분	현황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서울특별시	56	21.9	충청북도	103	55.9
부산광역시	2	0.7	충청남도	113	13.1
대구광역시	13	2.6	전라남도	50	30.8
인천광역시	63	5.9	경상북도	71	42.4
광주광역시	5	0.6	경상남도	35	8.1
대전광역시	23	3.2	강원특별자치도	562	176.5
울산광역시	6	0.3	전북특별자치도	27	5.3
세종특별자치시	12	0.6	제주특별자치도	3	1.3
경기도	1,372	418	계	2,516	787.2

※ 자료 : 국방부

[2026년 내 군유휴지(미활용 군용지) 정리계획]

구 분	계	매각	교환	총괄청 인계 등
면적	350만m ²	206만m ²	38만m ²	106만m ²
장부가액 (공시지가)	2,346억 원	1,989억 원	83억 원	274억 원

※ 자료 : 국방부

* 매각 : 토양오염 정화, 건물철거 등 완료 후 대규모 부지 등 매각가능성이 높은 토지 우선매각

* 교환 : 지자체 등과 상호 점유 중인 토지의 교환, 산림청에 사용승인 등 추진

* 총괄청(재정경제부장관) 인계 : 매각이 제한되는 소규모 토지, 도로·하천 등의 토지

□ 제정안은 이와 같이 발생하는 군유휴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사업시행 절차, 인·허가 의제, 각종 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 등 지원사항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 군사시설 설치에 따른 국가 안보상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려 온 반면, 군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 지역개발 지연 등 각종 규제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여 왔음.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아울러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특히 군유휴지가 소재한 접경지역 등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를 개발·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실제로 경기 북부지역과 강원도 등 군사시설이 밀집된 접경 지역⁷⁾은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아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7)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속초시, 강화군, 옹진군

[접경지역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지 역	2022	2023	2024	최근 3년 평균
경기도	61.6	60.5	55.1	59.1
김포시	32.8	37.2	33.8	34.6
파주시	28.9	30.0	29.7	29.5
연천군	14.5	15.0	15.3	14.9
고양시	32.8	32.7	33.7	33.1
양주시	24.6	26.7	26.2	25.8
동두천시	13.1	13.9	14.0	13.7
포천시	22.6	24.6	22.8	23.3
가평군	16.8	20.5	18.3	18.5
강원특별자치도	24.7	25.4	25.2	25.1
철원군	8.6	9.9	12.1	10.2
화천군	6.8	7.0	7.6	7.1
양구군	9.5	9.6	8.5	9.2
인제군	8.0	8.1	8.8	8.3
고성군	7.8	8.3	10.1	8.7
춘천시	19.3	20.1	18.9	19.4
속초시	20.1	17.5	18.4	18.7
인천광역시	51.9	48.8	45.7	48.8
강화군	12.1	12.7	11.4	12.1
옹진군	9.3	11.1	11.1	10.5

주: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

※ 자료 : 행정안전부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등을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용의 마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각종 인·허가 절차의 이행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여야 하는 상황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군유휴지 및 그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다만, 주요 개별 조문들에 대해 부처들의 이견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문별 검토에서 살펴보기로 함.

□ 참고로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지난 제21대국회에서도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로 유사한 내용의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음.⁸⁾

그러나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주요 지원사항 및 특례 조항에 대한 관계부처의 부동의 의견을 고려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8)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20.7.28.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2453호) (참고자료 1 참조)

2) 관계기관 의견

- 국방부는 제정취지에 공감하나, 국토방위 및 안보 수호가 국방부 본연의 임무임을 고려할 때 군이 사용하지 않는 군유희지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검토·승인하는 업무까지 국방부가 주관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부대이전사업은 특별회계로서 군유희지 매각대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삼고 있는데, 제정안과 같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할 경우 세입여건이 악화되어 향후 부대이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그밖에 관계부처의 의견은 조문별 검토에서 살펴보기로 함.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1) 종합계획·실행계획의 수립 및 군유휴지발전심의회(안 제4조~제7조)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군유휴지등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안 제4조),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유휴지등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5조).

또한 시·도지사가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6조),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확정·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유휴지등발전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안 제7조).

제 정 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u>시·도지사</u>”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거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u>군유휴지등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u>(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유휴지등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군유휴지등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6.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7.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9. 공공사업에 편입된 군유휴지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7조에 따른 군유휴지등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①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군유휴지등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군유휴지등발전심의회) ① 군유휴지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유휴지등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유휴지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실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4. 군유휴지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5. 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적정성·공정성 등에 관한 검토
6. 군유휴지등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행법상 군유휴지와 그 주변지역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정계획이나 전담 심의기구가 부재하여 그 활용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심의 절차를 법제화하여 관련 시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국방부는 군유휴지의 개발·활성화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핵심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서, 국토방위 및 안보 수호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군공여구역법」 및 「접경지역법」은 유사한 계획 수립·확정 체계를 두면서도 그 계획의 제출 대상 및 확정 주체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⁹⁾

□ 이와 같이 유사 입법례 및 관계 법령을 고려할 때, 계획의 제출 대상 및 확정 주체와 군유휴지등발전심의회의 소속을 국방부장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9) 「미군공여구역법」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접경지역법」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장 사무 관련 법령]

「정부조직법」

제36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자치혁신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2.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희(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80. 접경지역 및 섬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8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나. 사업의 시행

1) 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승인 등(안 제8조·제9조)

안 제8조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으로 정하고 있음.

안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승인권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아울러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거나, 천재·지변·파산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6항).

제 정 안	
제8조(사업시행자)	①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자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공동으로 출	

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4호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사업이 하나의 시·군·구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해당 사업이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3. 해당 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4. 해당 사업이 다른 시·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승인권자에게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5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사업승인권자가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의 범위와 사업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에 관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안 제9조제6항은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소에 앞서 처분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사업의 시행승인 취소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재산상 이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임. 유사 입법례가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문 규정을 개별 법률에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점¹⁰⁾을 고려하면, 제정안에도 승인 취소 전 청문 실시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미군공여구역법」 제38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접경지역법」 제29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인·허가 등의 의제(안 제10조)

제정안에 따르면, 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군유휴지등을 관광지나 도시개발구역, 물류단지, 산업단지나 택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그밖에 도로점용허가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괄호안 생략)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괄호안 생략)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제9조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설계심의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4.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3.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이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식으로 유사 입법례에서도 널리 채택하고 있는 입법형식임.¹¹⁾ 다만, 일부 의제 승인은 관계 부처들의 이견이 존재하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사업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를 의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의제 조항]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설계심의 등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개별 절차를 의제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시행자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유휴지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 자체는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봄.

11) 「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인·허가등의 의제) 및 「접경지역법」 제14조(인·허가등의 의제)

다만, 국방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설계심의를 국방·군사시설¹²⁾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제정안에 따른 개발사업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안 제10조제1항제23호는 군유휴지등 개발에 수반되는 수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등을 의제 대상에 규정하고 있음.

군유휴지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등 수도시설의 설치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관련 인가 절차를 의제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법」상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제정안에 따르면 위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사업자도 수도사업 인가를 의제받아 수도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¹³⁾

1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수도법」 관련 조항]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¹⁴⁾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 또는 상수도조합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삭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설치하는 시설 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도지사

13)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수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도사업 경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10조제1항제23호에 따르면 사업승인만으로 수도사업 인가가 의제되어, 위 예외 허용에 관한 절차가 우회될 수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호에 “사업시행자가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자인 경우에 한함”이라는 단서를 추가하자는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4) 「수도법」 제3조(정의)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3) 군유휴지의 처분 등(안 제14조)

안 제14조제3항은 국방부장관이 군부대 이전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군유휴지에 대한 정발 해제 및 매각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4조(군유휴지의 처분 등) ③ 국방부장관은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의 이전 완료일부터 <u>1년 이내에 군유휴지의 정발 해제 및 매각 등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 군유휴지가 장기간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그 관리 계획의 수립 시한을 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처분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국방부는 군유휴지에 대한 관리 계획(매각 등)이 부대 이전 후 실시되는 토양오염 조사 등을 거쳐 구체화되는 점, 군부대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는 군유휴지는 수천 개소¹⁵⁾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군유휴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5) 주둔지 외에 소초·진지·교통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여 소형 부지까지 포함할 경우 수천 개소에 달함.

안 제14조제5항은 국방부장관이 군유휴지에 대하여 징발 해제·양여·매각·사용허가·대부 등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의무적으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4조(군유휴지의 처분 등) ⑤ 국방부장관은 군유휴지에 대해 징발 해제, 양여, 매각, 사용허가, 대부 등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활용하고자 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제외한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의한 경우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 현행법상 군이 사용한 토지를 매각 등 처분하는 경우 그 전에 토양 오염을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나,¹⁶⁾ 사용허가나 대부에 있어서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명시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군유휴지 주변지역의 환경·안전상 우려를 감안하면 처분 유형에 관계없이 오염 제거를 선제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반면, 국방부는 사용허가 등과 같이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오염 제거를 선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16)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는 매각 등 처분하는 경우 토양오염을 정화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14조제10항은 국가가 군유휴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격을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4조(군유휴지의 처분 등) ⑨ 국가가 군유휴지를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u>국유지의 매각 가격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u>

□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¹⁷⁾, 제정안은 그 예외로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각대금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접경지역 등에 군유휴지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군유휴지의 매각대금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군사시설 이전 등을 위한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바¹⁸⁾,

17) 「국유재산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18)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2006년 1월 1일 이후 국방·군사시설이전에 따라 발생한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처분대금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국방·군사시설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군관사의 매입비용
3. 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공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
4. 국방·군사시설 이전지역의 주변지역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
5. 제4조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각할 경우 특별 회계의 세입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26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5.5% 수준¹⁹⁾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공시지가 기준 매각은 특별 회계 세입여건을 악화시켜 향후 부대이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9)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26년 적용): 65.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4) 지방자치단체의 군유휴지 활용 지원(안 제16조)

제정안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할 군유
휴지의 매입경비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군유휴지 매입대금을 5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제 정 안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군유휴지 활용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군유휴지 안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유휴지 중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토지 가. 도로·주차장·교량 나. 공원·녹지 다. 수도·공동구(共同溝) 라. 공공청사·문화시설 마. 교육시설·종합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유휴지 안의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련 토지 대금을 <u>5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도록 매각하거나, 5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대부할 수 있다.</u>

□ 군유휴지 비중이 커서 개발 필요성이 큰 지역일수록 낙후되어 재원 마련이 어렵고, 매각 또는 개발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운 하천이나 도로, 교량, 공원 등의 용지를 지자체 재원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바, 제정안이 장기분할상환과 용지 매입비 보조를 허용하려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유사 입법례인 「미군공여구역법」도 5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있음.²⁰⁾ 다만, 제정안은 상환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하고 “5년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음.

□ 장기분할상환 및 대부를 허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매입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상환기간의 상한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분할상환이 장기화될 경우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입 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바, 상환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장기간 분할상환을 허용할 경우 특별회계 세입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0) 「미군공여구역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군유휴지등에 관한 지원 등

1) 사업비 지원과 조성(안 제17조)

제정안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의 우선 증액 지원(안 제17조제1항),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안 제17조제2항),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금의 보조·융자 등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7조제3항).

제 정 안
제17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우선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군유휴지등 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사업 2. 군유휴지등의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3. 군유휴지등의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정비사업 4. 군유휴지등의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 5. 군유휴지등의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사업 6. 군유휴지등의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여 종합계획의 사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군사시설 설치에 따라 해당지역이 그간 감수해 온 불이익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안 제17조제2항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재원의 한정성 등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안 제17조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여건이 열악한 균유휴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함으로써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그 총액이 결정되는 한정된 재원으로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재원의 총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특정 지역에 대한 별도의 특별지원은 결과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될 교부세를 감소시켜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통교부세 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목적사업에 대한 교부 특례는 개별 법률이 아닌 일반법인 「지방교부세법」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임.²¹⁾

21) 개별 법률이 아닌 일반법인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율한 사례로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등을 들 수 있음.

2)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안 제19조)

제정안은 군유휴지등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군유휴지등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및 인·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9조).

제 정 안
제1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휴지등에 회사를 설립하는 자, 군유휴지등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③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인·허가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사용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안 제19조제1항은 군유휴지등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군유희지 지역은 장기간의 개발 제한으로 기업 입지 여건이 열악하여 민간투자 유인 없이는 자생적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조세 감면을 통해 군유희지등에 회사나 공장을 입지하도록 유도한다면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군부대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동 제정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8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연계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²²⁾

- 안 제19조제2항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2)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발부담금²³⁾의 경우 그간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군유휴지등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 중 하나로 보이는 점,²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부담금 감면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부과·감면을 해당 부담금의 근거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그 타당성에 관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⁵⁾

23)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징수금임.

24)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유휴지(軍遊休地)와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합리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지원도시사업구역(안 제21조~제23조)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군부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²⁶⁾을 지정(제21조)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제22조)하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이용규제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도시개발구역, 물류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함(안 제23조).

제 정 안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u>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6) 안 제2조(정의) 4. “지원도시사업구역”이란 군부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6.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균유휴지등의 개발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 광역적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미군공여구역법」도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²⁷⁾

27) 「미군공여구역법」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공장 신설·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안 제24·25조)

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면서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군유휴지등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²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안 제24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를 이전·증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 정 안
제24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된 군유휴지등에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 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2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된 군유휴지등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공장·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나²⁹⁾, 제정안은 동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황지역인 군유휴지등에 공장 및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에서도 군부대 이전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은 특수상황지역이 존재하고, 공장 등 산업시설과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이러한 낙후지역의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에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제정안은 특례의 대상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에 한정하고 있어,³⁰⁾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도권 전반의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그간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들어, 수도권 일부 지역에 공장·학교 입지 특례를 허용할 경우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특히 학교의 경우,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의 학생이 교육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내 학교 입지 특례가 오히려 지방의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임.

- 한편, 안 제24조 및 제25조가 특례의 대상 지역으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된바, 제정안의 인용 법률명을 변경된 제명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3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26.6.2. 제명 변경)

제2조(정의)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5) 교육재정지원의 특례(안 제26조)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군유휴지등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6조).

제 정 안
제26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군유휴지등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정주 여건을 제고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그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 다만, 교육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례 지원이 타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을 축소시켜 재정 불균형과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바,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보칙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는 보칙으로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안 제3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안 제33조), 과태료(안 제34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2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8조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승인권자가 부과·징수한다.

□ 안 제34조는 자료 제출 명령의 불이행 또는 거짓 제출, 출입·검사의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규율하는 유사 입법례³¹⁾의 경우보다 100만원 상향된 수준임.

31) 「미군공여구역법」 제39조(과태료)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접경지역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의무 이행 확보의 필요성, 유사 법령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원칙인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유사 입법례와 다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그 상한을 2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마. 부칙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인·허가 등의 의제 및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적용례와 인·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안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허가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승인 또는 인·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적용례를 두어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부터 인·허가의 의제 및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안 부칙 제4조는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 또는 인·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유사 입법례에서 제정안과 유사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적용례 및 경과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³²⁾

문 의 처

02)6788-5309

32) 유사 입법례

「접경지역지원법」 부칙 <법률 제6185호, 2000. 1. 21.>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허가등을 받거나 얻어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미군공여구역법」 부칙 <법률 제7854호, 2006. 3. 3.>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승인 또는 인·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승인 또는 인·허가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으로 본다.

※ 참고자료

1. ‘제정안’과 ‘제21대국회 발의안’ 주요 차이점

구분	제21대국회 발의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제2102453호)	제정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제2217057호)
군유휴지 정의	[제2조제2호] 군부대부지였으나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아니할 부지	[제2조제2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아니할 부지
군유휴지 주변지역 지정방식	[제2조제3호] 국방부장관이 군유휴지등발전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제2조제3호]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면·동 및 그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원도시 사업구역 정의	[제2조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	[제2조제4호]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
국가· 지자체 책무	[제3조] 국가의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 의무	-
심의회 명칭 및 구조	[제8조] 군유휴지등발전중앙심의회 (위원장: 국방부차관) 실무위원회 별도 설치	[제7조] 군유휴지등발전심의회로 명칭 변경 (위원장: 국방부장관) 실무위원회 규정을 두지 아니함
군유휴지 지원 사업단	[제10조] 국방부장관 소속 군유휴지지원사업단 설치	-
연도별 계획명칭	[제7조] 연도별 <u>사업</u> 계획	[제6조] 연도별 <u>실행</u> 계획
사업승인 취소사유	[제12조제6항제3호] 사정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제6항제3호] 천재·지변, 사업시행자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장기분할 상환 기간	[제15조제2항] 5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장기분할상환	[제16조제2항] <u>5년 이상</u> 기간을 정하여 장기분할상환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제16조제4항] 협의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 제출	[제10조제4항] 협의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구분	제21대 국회 발의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제2102453호)	제정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제2217057호)
사업비 지원 대상	[제2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제17조제1항]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문화복지시설 확충 사업 등 각 호로 구체화
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제20조의2]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	[제18조] 일반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
조세· 부담금 감면	[제21조제3항] 인·허가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	[제19조제3항] 인·허가 사유로 부과하는 사용료 면제
개발제한 구역 해제특례	[제22조] ‘군유휴지’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어 사용	[제20조] ‘군유휴지등’으로 대상 확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어 현행화
공장 신설 특례	[제26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내 군유휴지등에 적용	[제24조] 적용 대상을 ‘ <u>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된 군유휴지등</u> ’으로 한정하여 적용
학교 이전 특례	[제27조] 수도권 내 군유휴지등에 적용	[제25조] 적용 대상을 ‘ <u>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된 군유휴지등</u> ’으로 한정하여 적용
보상금 지급·환수	[제34조·제35조] 공동화된 지역경제 등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환수	-
지원도시 개발계획 취소	-	[제22조제2항]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거짓·부정한 승인, 천재·지변, 파산 등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취소 규정 신설
청문	[제37조] 승인 취소 시 청문 필요	-
부칙	[부칙 제2조] 인허가 경과조치만 규정	[부칙 제2조·제3조] 인허가 의제 적용례(부칙 제2조), 토지 수용·사용 적용례(부칙 제3조) 신설

2. 제정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종합계획 수립 등 (안 제4조 ~ 제7조)	국방부	○ 국방부는 국토방위 및 안보 수호가 본연의 임무로서, 군이 사용하지 않는 부지의 지역경제 활성화·주민복지 관련 업무를 소관하도록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검토 필요
인·허가 등의 의제 (안 제10조)	국방부	○ (안 §10①2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심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제정안의 개발사업은 적용대상이 아님.
	기후에너지 환경부	○ (안 §10①23호) 수도사업 인가는 국가·지자체·수자원공사만이 받을 수 있으나, 제정안은 민간 사업자도 수도사업 인가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므로 자구 수정 필요
군유휴지의 처분 등 (안 제14조)	국방부	○ 군유휴지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은 군부대 이전 후 실시되는 토양오염 조사 등을 거쳐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1년 내 관리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 ○ 사용허가 등을 승인함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토양오염 제거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으므로 신중검토 필요 ○ 부대이전사업은 특별회계로서 군유휴지 매각대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삼고 있는데 제정안과 같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할 경우 세입여건이 악화되어 향후 부대이전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군유휴지 활용 지원 (안 제16조)	국방부	○ 장기간 분할상환에 따른 부대 세입여건 악화를 고려할 필요
사업비 지원과 조성 (안 제17조)	행정안전부	○ 지방교부세는 전(全) 지방정부와 관련되므로 「지방교부세법」에서 논의 필요하며,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타 지방정부와 논의·합의 선행될 필요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안 제19조)	재정경제부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서 조세 감면 조치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개별법상 감면규정은 실익이 없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개별부담금 감면은 준조세적인 부담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필요최소한으로 감면 대상을 한정하고 형평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

구분	부처 의견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점용료 등에 대해 「공유수면법」 내 감면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
	농림축산식품부	○ 부담금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부담금의 근거 법률에서 감면대상 등이 규정될 필요
	산림청	○ 대체초지조성비는 원인자 부담원칙과 대체산림조성을 취지로 하는 「산지관리법」에 기반하며, 부담금 감면 역시 동법으로 규제함이 바람직함.
지원도시사업 구역 지정 등의 효과 (안 제23조)	문화체육 관광부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시 관광개발기본계획 등의 승인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합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안 제24조)	국토교통부	○ 수도권으로 인구·산업의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안 제25조)		
교육 재정지원의 특례 (안 제26조)	교육부	○ 특정지역 재정특례는 타 지역의 재정규모를 축소시켜 재정격차를 확대시키고, 이로 인해 교육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